

#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도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제1항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인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자체 판단에 의해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와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